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의안번호 : 제150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제출일자 : 2014년 10월 30일
- 회부일자 : 2014년 11월 5일

2. 제 안 이유

-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외곽을 둘러싼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길을 연결하여 조성한 총 8개 코스, 연장길이 157km의 산책길로서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열풍을 일으킨 걷기문화의 확산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울둘레길」을 시민 편하게 이용함은 물론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에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가능하고, 효율적 숲길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숲길관련 민간단체에 서울둘레길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설치·운영 개요

- 시 설 명 : 서울둘레길
- 규 모 : 연장길이 157km, 용마·아차산코스 등 총 8개 코스
- 공간구성 : 숲길, 안내판·이정표, 휴게시설 등
- 준공일자 : 2014. 11. 15
- 운영인력 : 6명 이내(센터장 1명, 일반관리원 4명, 보조원 1명)
※ 세부 운영조직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시 협의하여 구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대 상 : (특수법인)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남선우)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위탁업무
 - 서울둘레길 숲길센터(시민단체) 선정 및 관리
 - 서울둘레길 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
 - ▷ 서울둘레길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symbol) 개발
 - ▷ 서울둘레길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안내책자 제작·배포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 코스 및 운영프로그램 안내
 - ▷ 홈페이지 관리(예약프로그램 운영 등)
 - 시민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정기·비정기(계절별, 월별) 서울둘레길 걷기행사 개최
 - ▷ 초·중·고등학생 서울둘레길 완주 프로그램 운영
 - ▷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 숲해설사 또는 문화유산해설사가 진행하는 '스토리가 있는 숲길여행'

등 프로그램 운영

- 코별 특성화 전략 방안 마련
 - ▷ 기존 자치구 축제행사와 연계한 '숲길 함께 걷기축제' 추진
 - ▷ 생태숲길, 역사·문화의 길, 치유의 숲길 등 코스별 특성화 추진
- 주요 안내판, 이정표 등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 ▷ 이정표 보완 및 보수
 - ▷ 서울둘레길 노면 보수(연 2회 이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숲길의 운영·관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①항 8호 사목(수의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둘레길 조성에 따른 관리·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9호)

4. 관련 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서울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설치·운영)

- ①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트레킹관련 시설의 조성·정비 또는 운영, 관리 사업
 8. 등산·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7. 생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검토 의견

-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내사산(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21km와 외사산(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봉산) 157km를 연결하는 순환코스를 정비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들에게 탐방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되었음.
- 이 중 서울성곽길에 해당하는 내사산의 21km는 서울둘레길에 포함되어 있지만,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은 외사산 157km를 대상으로 사유지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었음(참고자료 1).
-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은 국비 매칭사업(국비 30%, 사비 70%)으로 2009년~2014년간 서울둘레길 조성에는 총 128억 5천1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약 30%의 국비지원을 받았음.
- 조성 완료된 서울둘레길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또한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국의 둘레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에서도 둘레길 유지·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둘레길 운영사무에 국비지원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둘레길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2015년 예산안에 1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이 중 9억원이 국비지원금임.
- 서울둘레길의 운영사무에는 서울둘레길 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코스별 특성화, 주요 안내판, 이정표 등 소규모 시설물의 유지보수, 서울둘레길 숲길센터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분야의 업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판단됨.

- 다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를 수의계약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민간위탁 추진방법을 변경하여 공개모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조직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서울둘레길의 경우와 같이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산림청 산하의 민간 단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서울둘레길 8개 코스 157km와 서울성곽길 21km(총 178km)〉